

요약

최근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그린워싱 등 사회적 책임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보험료 책정 등의 과정에서 그린워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그린워싱 위험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제적 정책 동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대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 및 투자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친환경적 이미지로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¹⁾ 및 불충분한 정보공개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²⁾

-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SG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5년까지 친환경과 관련한 투자 금액은 약 5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³⁾
- 그러나 EU에 따르면, 사업 부문들 중 특히 의류, 화장품 및 생활용품과 같은 소비재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온라인 사이트 중 42%가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 London School of Economics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에서 그린워싱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음을 보도함⁵⁾
 - 그린워싱 소송의 주요 원인은 기업 및 정부의 의무 불이행, 상품의 속성 문제,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재무위험 공시에 관한 것으로, 관련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주요국들은 그린워싱 및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의 EU 및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Net Zero 전환 가속화 계획,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Eidgenössische Finanzmarktaufsicht; FINMA)의 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 지침⁶⁾ 등이 있음

○ 그린워싱과 관련해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책정 등 위험의 인수 과정에서 그린워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보험회사의 그린워싱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⁷⁾

- 1)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질적으로 상품 및 경영 활동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친환경에 가까운 것처럼 홍보하는 등 '친환경적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함
- 2) Deloitte(2021. 5. 25), "Greenwashing - Product Development Considerations for Financial Services Firms"
- 3) Swiss Re(2021. 9. 3), "'Greenwashing' risks and the path towards real progress"
- 4) EU(2021. 1. 28), "Screening of websites for 'greenwashing': half of green claims lack evidence"
- 5) Kennedys(2022. 5. 26), "Greenwashing, climate change disclosures, and financial lines risks"
- 6) 보험연구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그린워싱 예방 및 퇴치 지침 발표」, 『해외보험동향』, 2021년 겨울호 pp. 6~9

- 첫째, 고객의 ESG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연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또는 환경친화적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지속가능성' 또는 '친환경'을 표방하는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보험회사들도 등장함
 - 탄소배출권 대응방안(carbon credit solution) 또는 탄소상쇄제도보험(carbon offset insurance)과 같은 특정 ESG 상품 또는 자문서비스를 출시하는 재보험사도 증가하고 있음
- 둘째, ESG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없고 검증이 부족해 ESG 상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기존 상품이 '친환경적'으로 재브랜딩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 셋째, 기업들이 제공하는 ESG 관련 공개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 및 정확도가 부족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
 -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데이터는 ESG 또는 친환경적 목표를 가진 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과거의 데이터가 변화하는 기후위험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특성상 제3자의 역할과 행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투자 측면에서 특히 중소규모의 보험회사는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의 조치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최종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 중개인의 행동이나 표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

○ 세계 각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녹색 분류체계, 공시기준 등을 제정·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

- 각국의 규제당국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ESG 관련 규제를 제정·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관련 규제는 2020년 206건으로 최근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추세임⁸⁾
- EU는 녹색 분류체계(Taxonomy), 공시기준(NFRD, CSRD, SFDR) 등을 발표하며 글로벌 ESG 관련 규제 정립을 선도하고 있음
 - 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 '20. 7월 시행)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분류·정의하여 친환경 지속가능한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분류체계를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⁹⁾
 - NFRD(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18년 시행)¹⁰⁾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인권존중 등 비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시 지침이며,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24. 1월 시행 예정)¹¹⁾는 NFRD의 개정안으로 공시 대상 기업과 공시항목 등을 확대한 공시기준임

7) Deloitte(2022. 2. 16), "Identifying and mitigating Greenwashing Risk: Considerations for Insurance Fi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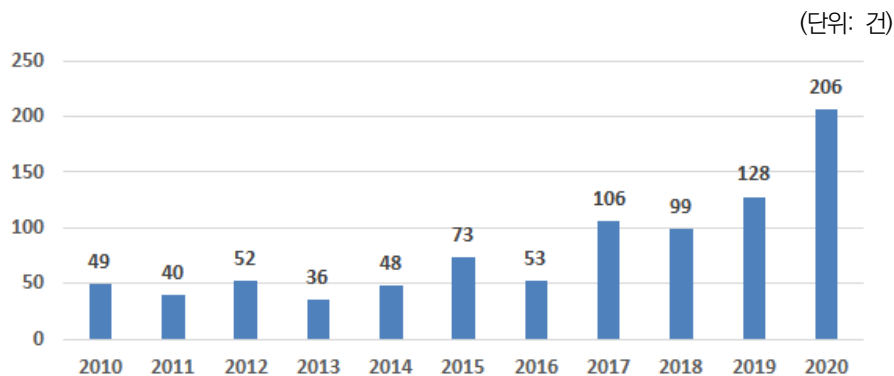
8) <https://www.msci.com/who-will-regulate-esg>

9)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Text with EEA relevance)

10)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Text with EEA relevance

-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21. 3월 1단계 시행)¹²⁾은 EU 역내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금융회사들의 그린워싱 방지와 민간자본의 투명성 제고, 지속가능투자 촉진 등이 목적임
- 우리나라에서도 '21년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¹³⁾하고,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¹⁴⁾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음

〈그림 1〉 글로벌 ESG 관련 규제 건수 추이



자료: MSCI

- 보험회사는 다양한 위험 범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린워싱 위험 요인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¹⁵⁾, 향후 규제당국에 의해 제정·발표될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선제적으로 파악·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및 상품 개발, 보험료 책정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과정에서 그린워싱 위험을 식별·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ESG 데이터 관련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함
 - 각국의 규제당국은 그린워싱을 기업 및 기관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material risk)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객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감독 조치를 취할 계획임¹⁶⁾
 - 국내에서도 EU 등 선진국과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제정·발표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산업은 이로 인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1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 (EU) No 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12)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ext with EEA relevance)

13) 환경부 보도자료(2021. 12. 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 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5) Deloitte(2022. 2. 16), “Identifying and mitigating Greenwashing Risk: Considerations for Insurance Firms”

16) FCA(2021. 10), “FCA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